

# 충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156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3.10.

제출자 : 충주시장

## 1. 제안이유

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를 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 해결함으로써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상담의 범위(안 제4조)

- 시민생활과 관련된 민사·형사·가사·행정사건에 관한 사항
-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각종 법률상담,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

### 나. 비용과 우선 상담(안 제5조)

- 상담실은 무료로 운영하며,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은 우선 상담한다.

### 다. 상담방법(안 제6조)

- 상담실 운영하는 날짜에 방문 상담하고, 방문이 어려운 사람은 서면이나 인터넷 온라인 상담 병행 실시
- 방문상담은 분기 1회 이상 운영하고, 상담수요에 따라 확대·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음.

### 라. 법률상담관 등 (안 제7조)

- 상담책임관은 업무담당 부서장, 운영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함.
- 법률상담관은 시 고문변호사로 하며, 상담한 내용의 비밀 유지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 : 불임

###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### 다. 합의 : 해당 없음

### 라. 그 밖의 사항

- (1) 입법예고 결과 : 접수된 의견 없음
- (2)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- (3) 부패영향평가 : 해당 없음
- (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

## 충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를 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 해결함으로써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충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명칭)** 상담실의 명칭은 "충주시 무료법률상담실"(이하 "상담실"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**제3조(공간)** 상담실은 충주시 청사 내의 적절한 공간에서 운영되며, 필요에 따라 외부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다.

**제4조(범위)**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시민생활과 관련된 민사·형사·가사·행정사건에 관한 사항
2. 충주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각종 법률상담과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시민생활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

**제5조(비용과 우선 상담)** ① 상담실은 무료로 운영한다.

② 충주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상담하도록 하며, 필요하면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.

1. 국가유공자, 참전유공자, 독립유공자, 의사상자와 그 유족
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3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4. 그 밖의 취약계층으로서 우선 상담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

**제6조(상담방법)** ①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제2항에 따라 정한 날짜에 상담실을 방문하여 상담한다. 다만, 방문상담이 어려운 사람은 서면이나 인터넷 온라인을 통하여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상담실은 분기 1회 이상 운영하도록 하되, 상담 수요에 따라 확대·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**제7조(법률상담관 등)** ① 상담실의 운영과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, 법률상담관, 운영간사를 둔다.

②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,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담당주사가 된다.

③ 법률상담관은 충주시 고문변호사로 한다.

④ 법률상담관은 상담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상담 처리)** ① 상담 답변은 상담실에서 바로 하되, 충분한 검토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차후에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한다.

② 제2항에 따라 회신할 때나 제6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서면이나 인터넷 온라인을 통하여 상담하였을 때에는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는 등 상세하게 회신하여야 한다.

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을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.

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, 요청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**제9조(기록 유지)** 상담책임관은 별지 서식의 법률상담 기록카드를 갖춰 놓고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수당)** 법률상담에 참여한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1조(운영 세칙)** 상담실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서식]

(앞면)

접수번호 No.		<b>법률상담 기록카드</b> (제9조 관련)			접수일
사 건 구 분	<input type="radio"/> 민사( ) · 부동산, 금전, 손해배상, 임대차, 경매 등 <input type="radio"/> 가사( ) · 혼인, 호적, 상속 등			<input type="radio"/> 행정( ) · 행정처분, 조세 등 <input type="radio"/> 형사( ) · 재산범죄, 인격범죄 등	
	성명	(서명)	주소		
신청인	생년월일 (성별)		직업		연락처
	구분	<input type="radio"/> 일반시민( ), <input type="radio"/> 국가보훈자( ), <input type="radio"/> 장애인( ) <input type="radio"/>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( ), <input type="radio"/> 그 밖에( )			
	상담 경로	<input type="radio"/> 시정소식지( ), <input type="radio"/> 충주시 홈페이지( ), <input type="radio"/> 이웃( ), <input type="radio"/> 그 밖의 경로( )			
상담할 내용					
상담관 의견					
처리 구분	상담으로 종결	법률구조 안내	추가회신 필요	그 밖에	
상담관 (서명 또는 인) <b>충주시 무료법률상담실</b>					

※ 팔호 안의 해당사항에  표시 하시고, 상담할 내용이 많으면 뒷면에 추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
(뒷면)

상담할 내용

# 관계법령

## □ 지방자치법

제8조(사무처리의 기본원칙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

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.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

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